

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오늘 韓賢應委員長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本委員會에 出席하지 못하시고 幹事인 제가 會議를 進行하게 됨을 委員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바쁘실텐데도 간단한 문제로 다시 召集하게 됨을 委員長 立場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以上으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의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 17分 散會)

○ 出席委員

田炳萬	權五範	金東暉
金鍾烈	金汶泰	孫龍浩
尹明奎	李仁求	李鍾萬
李天揆	蔡雲錫	

○ 出席專門委員

金建在

○ 出席公務員

建築課長 金基大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변안)동의

제안년월일 93. 5. 20.

제안자 채운석 의원의 1인

1. 수정이유

1993년 5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동년 5월 1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동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동 조례안과 관련, 집행기관의 의견제시(93. 5. 18. 서울 22개구 건축과장회의)가 있어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견제시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22개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으로 판단되어, 기 의결한 동 수정안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인용조문 삭제 (안 제26조)

○ 단서조항 추가 (안 제43조의 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페이지」에 계속)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변안)동의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중 다음과 같이 변안한다.

제26조중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제43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4.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 이상)	3.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 이상)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3.0 이상	2.0 이상
공 동 주 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2층 이하로 3세대 이하인 것	1.0 이상	1.0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2.0 이상	1.0 이상
	연립주택		3.0 이상	2.0 이상
	아파트		6.0 이상	5.0 이상
기 타 건 축 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2.0 이상	1.0 이상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일반,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 이상	0.5 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500㎡ 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3.0 이상	2.0 이상

수 정 안

원 안

제26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 표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4.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 이상)	3.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 이상)
500㎡ 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3.0 이상	2.0 이상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3.0 이상	2.0 이상
종 교 시 설		3.0 이상	2.0 이상
공 동 주 거 지 역 내 의 주 택 인 경 우	다세대	2층 이하로 3세대 이하인 것	1.0 이상
	주 택 인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2.0 이상
		연 립 주 택	3.0 이상
	아 파 트	6.0 이상	5.0 이상
	1,000㎡ 미만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2.0 이상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일반,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 이상	0.5 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대 비 표

수 정 안

제26조(대지안의 공지) -----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제43조의 표

<단위 : 미터>

구		분	의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 <sup>2</sup>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4.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 이상)	3.0 이상(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 이상)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sup>2</sup> 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료시설			3.0 이상	2.0 이상
공 동 주 택	다세대 주택인 경우	2층 이하로 3세대 이하인 것	1.0 이상	1.0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2.0 이상	1.0 이상
	연립 주택		3.0 이상	2.0 이상
	아파트		6.0 이상	5.0 이상
기 타 건 축 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sup>2</sup> 미만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2.0 이상	1.0 이상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일반,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 이상	0.5 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 이상	0.5 이상
500m <sup>2</sup> 이상 창고·자동차 관련 시설(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3.0 이상	2.0 이상